

## 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bout DSB of WTO

주정\*

Zhou, Zhen

김석철\*\*

Suk-Chul Kim

〈목 차〉

- I. 서 론
  - II. WTO 분쟁해결 절차와 실태 분석
  - III. WTO 분쟁해결 사례 분석
  - IV. WTO 분쟁해결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WTO 분쟁해결, DSB, 패널판정, 국제분쟁, 상소기구

\*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I. 서론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무역 확대와 국제무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되었다.

WTO는 무역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WTO 무역분쟁 해결기구(DSB)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가장 성공적이고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역관련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sup>1)</sup>

WTO DSB는 WTO 분쟁 해결 협정의 규칙 및 절차에 따라 협의, 주선, 조정, 중재와 패널 보고서 채택, 상설 항소 기구의 보고서 채택,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불이행시 제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우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강력한 무역분쟁 해결기구이다.

DSB는 분쟁 당사국 간의 협의로 대화를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분쟁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WTO 사무총장의 주선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무역 분쟁 당사자 일방이 패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상설 상소 기구의 상소 절차가 진행된다.<sup>2)</sup> WTO 분쟁해결 기구가 출범한 1995년 1월 1일부터 2017년 현재까지 WTO에 접수된 총 제소건수는 528건에 이르고 있다.

DSB에 의한 분쟁해결은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분쟁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실제 제도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무역 분쟁의 양적 증가에 따라, 패널과 상소 위원의 업무부담 과중, 개도국의 교차보복 이행불가, 경제와 정치역량 격차에 의한 개도국의 의견과 권리의 박탈, 중재 및 소송 중에 패널설치 요구에 따른 동시 진행,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무역과 환경, 투자, 노동, 경쟁, 부패와 관련한 협정 불비 등의 문제점들은 WTO 분쟁해결 기구가 향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 WTO 분쟁해결 이행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적 권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WTO 분쟁 해결 기구(DSB)의 분쟁해결 단계를 당사자 협의

1) 박종삼, “WTO 협정하에서 FTA 체결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 p.234.

2) 임송수,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 제179호, 세계농업, 2015.7, pp.178-182.

단계, 패널 설치 및 해결 단계, 상소 단계, 이행 권고 단계 및 불이행 제재 방안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WTO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WTO 분쟁해결 협정 발효일부터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쟁사건 제소 건수의 비교, 최근 10년 간 주요 국가의 분쟁사건의 제소 및 피소의 건수 비교, 2016년 주요국가의 수출입 실적과 분쟁사건 건수의 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발생된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WTO 분쟁해결 절차와 실태 분석

WTO 분쟁해결 제도는 회원국이 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 받았을 때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합의된 공식 절차를 지칭한다.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22조에서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용된다고 판단될 때 쌍무적 또는 다자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협약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체약국 간에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GATT가 출범 후 회원국 수가 23개국에서 120여 개국으로 확대되면서, 운영 중 패널 절차의 진행 기간 미정, 패널판정 불이행,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법적 효력, 분쟁 해결 제도의 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분쟁해결 한계점이 노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5년 WTO 분쟁해결 협정이 도출되었다.

WTO 분쟁해결 협정은 기존의 GATT 협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첫째, WTO 체제에서는 GATT가 규정하고 있는 패널보고서의 만장일치 동의제 대신 모든 국가가 반대하지 않으면 승인이 되도록 하여 분쟁 해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둘째, 각각의 절차단계 시한과 전체 절차 이행 시간을 설정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정비하였다. 셋째, 패널 보고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국제간의 통상분쟁 해결에 있어 다자체제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구속력 있는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상설상소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사법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여섯째, 개도국이나 최빈 개도국 관련 해결은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sup>3)</sup>

3) 성태곤,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촉진 및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관세정』, 2017, pp.11-12.

## 1. 선행연구

WTO 분쟁해결과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먼저 杜驥立(2015)의 “WTO 분쟁해결제도상 DSU보상조치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WTO 분쟁해결 협정중의 보상조치와 관련된 금전보상의 가능성, 보상의 소급적용, 보상조치의 ‘역컨센서스’등 광범위한 의미상의 보상조치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절차를 논의하였다.<sup>4)</sup>

김현정(2013)의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WTO 협정과 비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에서는 WTO협정과 기타 조약간의 상호 충돌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sup>5)</sup>

정기창(2013)의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분쟁해결정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에서, WTO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흠결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WTO 분쟁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현행 분쟁해결 절차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sup>6)</sup>

김호철(2012)의 “WTO 분쟁해결절차: 이행 및 구제절차”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권고 및 판정의 이행과 보상 및 양허의 정지로 구분하여, DSU 제21조 및 제22조의 조문별 내용과 쟁점, 그리고 동 규정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회원국 관행,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sup>7)</sup>

안덕근과 이효영(2010)의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에서는 교차보복 사례 (EC-바나나, 미국-도박서비스 및 미국-고지대면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sup>8)</sup>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WTO 분쟁 해결 기구(DSB)의 분쟁해결 단계를, 당사자 협의 단계, 패널 설치 및 해결 단계, 상소 단계, 이행 권고 단계 및 불이행 제재 방안 단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 것에 반해, 실제 단계별 이행을 통하여 합의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제시에 주력하였다. 이후, WTO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WTO 분쟁해결 협정 발효일부터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쟁사건 제소 건수의 비교, 최근 10년 간 주요 국가의 분쟁사건의 제소 및 피소의 건수 비교, 2016년

4) 杜驥立, 학위논문: ‘WTO분쟁해결제도상 DSU보상조치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 p.2.  
 5) 김현정,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WTO 협정과 비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3, p.89.  
 6) 정기창,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분쟁해결절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무부』, 통권 제112호, 2013.8.20, p.49.  
 7) 김호철, “WTO 분쟁해결절차: 이행 및 구제절차”, 『법무부』, 통권 제108호, 2012.12.20, p.43.  
 8) 이효영,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법무부』, 통권 제92호, 2010.4, p.32.

주요국가의 수출입 실적과 분쟁사건 건수의 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여 WTO 분쟁해결 기구의 실태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실제 발생된 분쟁 사례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2. WTO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해결 절차

### (1) 패널설치 이전 당사자 협의, 주선, 조정, 중재에 의한 해결<sup>9)</sup>

#### 1) 당사자 협의

분쟁발생 후 패널설치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기 이전에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협의요청을 접수한 회원국은 별도로 상호 합의 하지 아니 하는 한 합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답변하며, 30일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주선, 조정

주선과 조정은 분쟁당사국이 서로 합의하여 다른 제3자의 수선과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주선, 조정 절차는 당사국이 언제든지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경우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3) 중재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는 비공개이므로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sup>10)</sup>

### (2) 패널설치에 의한 해결<sup>11)</sup>

#### 1) 패널설치와 구성

WTO 회원국간 분쟁 당사국이 협의를 거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통 제소국에서 패널구성을 요청하며 양국 합의로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전문

9)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5.7. pp.433-434.

10) 장송화, “WTO 판정의 집행과 구제수단: DSU 22.6 중재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127호, 2016.2, p.14.

11)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5.7. pp.446-439.

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한다.

## 2) 패널의 검토단계

WTO 패널은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고 패널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 보고서를 회원국에게 회부한다. 분쟁당사국이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검토를 요청한다. 패널은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패널구성 과 위임사항에 대한 합의 시점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 당사국에 제시 시점까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3) 패널보고서의 채택

패널보고서는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후 20일 이후 패널 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패널 보고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패널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반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패널 보고서가 회원국들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소의사를 통보하거나 패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 (3) 상소기구 설치에 의한 해결<sup>12)</sup>

#### 1) 상설 상소기구 설치와 구성

패널 단계에서 최종 패널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당사국이 해결방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상소를 할 수 있다. 상설 상소기구는 사실상 최고법원 또는 최고상급에 해당되며 분쟁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상소를 할 경우에는 3명의 위원으로 상소기구가 구성되며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다.

#### 2) 상소 심의 절차 및 보고서의 채택

상소 심의 절차는 상소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상소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60일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농산품과 같은 부패성 상품에 관한 긴급한 상황이 있는 분쟁은 상소 심의 절차를 더 단축시켜야 한다. 상소보고서가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채택 불가 결정이 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된다.

12)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5.7. p.440.

(4) 권고 및 결정의 이행<sup>13)</sup>

1) 이행기간

패널 또는 상소 보고서가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패소국이 분쟁 해결 기구의 권고안 또는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 권고 및 결정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승소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며, 분쟁 당사국들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은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상황 감시

분쟁 해결 기구는 패소국이 채택된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취한 이행조치가 대상협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패소국에 이행조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패널에 회부하여 9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5) 불이행시 제재 방안<sup>14)</sup>

패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 내에 채택된 권고안이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상 및 양허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 해결 기구가 설정한 합리적인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이 보상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소국이 보복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해결 기구가 이행기간이 종료된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소국에 의한 보복조치는 보복법위와 절차에 대해 분쟁 해결 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복권의 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표1〉 WTO 분쟁해결 기구의 분쟁해결 절차

단계	진행	내용	기간
패널설치 이전단계	협의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 방식	신청일부터 30일
	추천, 조정	제3자를 통해서 분쟁해결 방식	신청일부터 60일
	중재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 방식	신청일부터 60일
패널해결 단계	설치	위의 절차를 통해 분쟁 미 해결 시 패널설치 신청	요청일부터 15일
	구성	패널은 원칙적으로 3인으로 구성함.	패널설치일부터 20일
	검토 작업	패널과정에 관한 일정 확정, 분쟁당사국이 준비서면의 제출	패널구성과 위임사항에 대한

13)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5.7. p.441.

14)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5.7. pp.442-443.

단계	진행	내용	기간
	분쟁당사국에 보고서 제시	초안보고서 제시, 중간보고서 제시, 최종보고서 제시	합의시 으로부터 6개월
	보고서 채택	패널보고서가 배포 후 채택여부 결정	보고서 배포일 부터 60일
상소단계	상소의사 통고	패널보고서에서 제기된 법률문제와 패널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상설상소 신청	상소의사 통고일부터 60일
	구성	상설상소기구 7명 위원 중 3인으로 구성함	
	검토 작업	패널의 법률적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수정, 반복	
	보고서 채택	보고서사 배포된 후 DSB가 총의로 동 보고서를 채택여부 결정	보고서 배포 후 30일 이내
이행권고 단계	합리적인 이행기간 설정	패소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안 또는 판정에 대해 입장을 통보하고 이행 일정을 확정	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행기간	분쟁해결기구가 패널을 설치한 날로부터 합리적인 이행기간 확정까지의 기간	15개월
	이행상황 감시	채택된 권고안이나 판정의 이행상황을 감시	90일
불이행 제재방안	보상 및 양허정지	권고안이나 판정이 합리적인 이행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취하는 조치	
	보복조치의 승인요청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	합리적인 이행기간 종료 후 20일
	보복조치 확정	보복조치의 범위 확정, 실효성에 대한 판정	

<자료: 이신규, 「국제통상론」, 제10장 제2절 내용 정리, 2015년>

### 3. WTO 분쟁 발생추이 분석

WTO 분쟁해결 제도가 도입된 1995년 1월 1일부터 2017년 현재까지 23년 동안 분쟁해결기구에 접수된 총 제소건수는 528건 이다. 접수 건 중에서 분쟁당사국간에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 해결된 것은 100여 건 내외이며, 나머지 400여 건은 WTO의 패널 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으로 해결되었다.

WTO의 DSB에 접수된 건 중 선진국이 371건(70%), 개도국이 157건(30%)을 제소하여 선진국이 제소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은 228건(63%)이나, 개도국이 선진국을 상대로 제소한 건은 132건(37%)에 불과



하였으며, 개도국을 상대로 한 선진국의 제소 건은 85%로 매우 높게 나타나 선진국의 WTO DSB 제소 이용률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표2〉 선진국과 개도국의 제소 건수

(단위: 건)

제소국	제소 건수	선진국 상대건수	개도국 상대건수
선진국	371(70%)	228(63%)	143(85%)
개도국	157(30%)	132(37%)	5(15%)
합계	528	360	168

<자료: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by_country_e.htm). 2017. 7. 기준>

2007부터 2016까지 연도별로 제소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 13건, 2008년 19건, 2009년 14건, 2010년 17건, 2011년 8건, 2012년 26건, 2013년 20건, 2014년 14건, 2015년 13건, 2016년 17건으로,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한 분쟁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2년이 26건으로 분석되었다.<sup>15)</sup>

개별국가의 WTO 분쟁 해결 제소건수는 미국이 28건으로 가장 많으며, EU 21건, 중국 15건, 일본 11건에 비해, 한국은 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2007- 2016 국가별 제소 현황

(단위: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한국	0	0	1	0	1	0	1	1	0	0	4
중국	1	2	3	1	1	3	1	0	1	2	15
미국	4	3	2	4	1	5	3	1	2	3	28
일본	0	1	0	1	0	3	2	0	2	2	11
EU	0	3	2	1	3	2	3	5	0	2	21
인도	0	1	0	1	0	1	2	1	1	0	7
아르헨티나	0	0	1	0	0	3	2	0	0	0	6
브라질	1	1	0	1	0	1	0	1	0	3	8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2017. 기준>

15) <https://www.wto.org>

국가별 피소현황은 중국이 34건, 미국이 33건, EU가 27건임에 비해, 한국은 3건으로 제소에 비해 피소가 매우 적으며, 중국이 가장 높은 피소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 2007- 2016 국가별 피소 현황

(단위: 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한국	0	0	1	0	0	0	0	0	1	1	3
중국	4	5	4	4	2	7	1	1	2	4	34
미국	3	6	3	2	3	6	2	2	1	5	33
일본	0	0	0	0	0	0	0	0	0	0	0
EU	3	4	4	3	0	3	4	3	2	1	27
인도	1	1	0	0	0	1	1	0	1	1	6
아르헨티나	0	0	0	1	0	5	0	0	0	0	6
브라질	0	0	0	0	0	0	1	0	1	0	2

<자료: WTO/ dispute settlement - chronological list of disputes cases. 2017. 기준>

국가 분쟁 건수는 당해국가의 수출입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출입 실적이 높을수록 분쟁건수도 함께 올라가는 것에 반해, 수출입실적이 낮은 국가는 분쟁건수도 적은 편이다.<sup>16)</sup>

<표5>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수출입에 비하여 분쟁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개도국이 수출입실적에 비하여 분쟁건수가 많은 것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되는 분쟁해결 방식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 진다.

〈표5〉 2016년 주요국가의 수출입실적과 분쟁발생건수의 비율

(단위: 억 달러/건)

구분	수출총액	수입총액	수출입실적(A)	분쟁발생건수(B)	A/B
한국	4954.26	4061.92	9016.18	7	1288
중국	20981.61	15874.31	36855.92	49	752
미국	14546.07	22513.51	37059.58	61	607
일본	6449.33	6069.27	12518.60	11	1138
EU	19323.49	18888.29	38211.78	48	796
인도	2640.20	3590.65	6230.85	13	479
아르헨티나	577.37	556.09	1133.46	12	94
브라질	1852.80	1434.74	3287.54	10	328

<자료: 중국 경제통계청>

16) 김윤화, “동남아시아 WTO 무역분쟁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7.2, pp.14-15.

### Ⅲ. WTO 분쟁해결 사례 분석

앞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각 단계별 국가별 제소현황과 피소현황 및 주요국가의 수출입실적과 분쟁발생건수를 살펴보았다. 이어 이번 장에서는 WTO 분쟁해결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별하여 진행추이와 해결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 1.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분쟁사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서 2014년 1월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러시아는 신속하게 EU 전체 회원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돼지가공 제품에 대하여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러시아는 EU는 돼지고기 전체 수출량의 1/4를 수입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수입을 금지하자 2014년 6월에 EU는 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리투아니아 등 소수의 국가인데 러시아가 EU 전체 회원국에게 돼지고기 및 가공식품의 수입 금지하는 것은 병해충 발생시 발생 지역에 한하여 위생검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4년 7월 22일 WTO 분쟁해결 기구는 패널을 설치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2016년 9월 러시아의 동 조치가 WTO 규정상의 위생검역 지역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발표했으며, 러시아는 이 결정에 대한 불복하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도 동일한 판정을 내렸다.

#### 2. 브라질의 미국의 면화보조정책에 대한 분쟁사례

1990년대 세계 면화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면화 가격이 하락하자 미국은 직접지불, 목표가격 보장 등의 국내보조와 자국 면화 수입상에 대한 자금융자 등 수출장려 정책을 취하며 면화 생산과 수출이 강세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브라질은 면화수출대국으로서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자국 농업인들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외화 수입도 대폭 감소되었다.

브라질은 미국의 면화 부당 보조정책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3회에 걸친 협정회의에도 실패하였으며 결국 WTO에 제소하였다. 2004년 9월 WTO 분쟁해결 기구는 미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판정을 불복하고 상소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브라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2009년 3월 3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분

쟁 해결 기구에 미국을 상대로 총 25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보복조치를 신청하였다.<sup>17)</sup>

중재패널은 2009년 8월 31일 브라질이 미국에 대해 연간 총 2억 9,470만 달러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으나 미국 정부가 WTO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자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행위가 세계무역을 무질서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102개 미국 제품에 대하여 무더기로 수입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하였다. 2010년 4월 보복조치 발동 하루 전날 브라질이 교차보복을 새로운 농업법 도입 때까지 연기하는 대신 미국은 면화산업 발전기금을 브라질에게 2014년 미화 3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면화 보조 정책을 포함한 농업법을 발표함으로써 브라질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소송을 취소하고 12년 만에 브라질과 미국 사이의 면화보조정책 분쟁은 종료되었다.

### 3.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한·일 수산물 분쟁 사례

2011년 03월 일본 동부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후 한국은 일본 전체 수산물의 15%에 해당되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본은 이에 반발해 여러 차례 WTO 위생검역(SPS)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2015년 6월에 WTO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정식으로 협상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에 일본은 2015년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 요청을 하였다.

WTO는 2016년 2월 우루과이와 프랑스·싱가포르로 구성된 패널 3인을 구성하고 공식적으로 분쟁해결을 시작하였다.<sup>18)</sup> 한국이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한 반면, 일본은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양이 국제 표준수치보다도 낮으며, 한국의 금지 조치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차별 무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2017년 7월 WTO는 한국의 증거 제시 부족을 이유로 7년간 이어온 해당 분쟁에서 한국 패소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감정 등을 고려해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

### 4. 미국·멕시코 간의 돌고래 보호 관련 참치 분쟁사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상표법이 규정한 ‘돌고래 보호’ 라벨의 요건에 의거 멕시코의 참치잡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멕시코 산 참치 수입을 거부하였다. 멕시코는 2008년 미국 상표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하였다. WTO는 2012년 5월 미국

17) 안덕근·이효영,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법무부』, 통권 제 92호, 2010.4, pp.29-33.

18) 류난영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뉴시스, 2017.10.17.

의 멕시코 산 참치 수입 금지 조치가 돌고래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WTO 비차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2013년 돌고래 보호 라벨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멕시코는 미국의 발표한 새 내용도 또한 WTO 규범 위반된다면서 미국을 상대로 WTO에 이행분쟁을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2015년 11월 미국의 이행조치도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고 멕시코는 2016년 3월 상소기구에 연간 4.7억불 규모의 무역보복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중재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재 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이행조치를 도입하였고 2차 이행조치 판정을 위하여 두 번째 이행패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또 한편 2017년 4월 2차 이행 패널과 동시에 진행된 중재에서는 멕시코가 주장한 무역 피해액인 4억723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인 1.6억달러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판정이 내려져, 동년 5월 22일 상소기구에서는 멕시코가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 IV. WTO 분쟁해결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분쟁해결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패널 부담의 과중문제 해결을 위한 패널 기구 확대

1995년 1월 1일 WTO 분쟁 해결 기구 출범부터 2017년 현재까지 분쟁해결 기구에 통보된 총 제소 건수는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528건에 이르렀고, 그 중 400여 건에 대하여 WTO의 본원적 분쟁해결 방법인 패널보고서 혹은 상소기구보고서가 채택되고 해결되었다. 현재 국제무역의 발전에 따라 분쟁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기술적으로 사안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WTO 분쟁해결 기구는 과중한 업무처리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WTO에 접수된 사건 중 패널 사건의 2/3가 상소심에 회부되는 등 추가 관련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 국가의 제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 기구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소위원 등 패널 전문가 Pool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이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재 WTO 회원국들은 총 164개 국으로 전 세계 무역의 98%를 점유하고 있다. WTO 회원국 중에 선진국이 제소한 분쟁 건수는 총 제소 건수의 2/3를 초과하고 있다. 반면 개

도국의 WTO 분쟁 해결 협정 이용은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sup>19)</sup> WTO 분쟁 해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도국은 관련 제안과 의견을 되도록 많이 제출해야 한다. 개도국에게는 이행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주고, 이와 반대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신속 절차를 통한 이행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 WTO 협정 내용과 판정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기술 지원 체제를 개선하는 조치들은 개도국의 실질적 WTO 분쟁해결 기구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진다.<sup>20)</sup>

선진국은 막강한 경제적 우위와 국제적인 정치 역량을 통하여, 개도국과의 협정이행이나 분쟁해결을 지연하거나 개도국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국제무역의 상호주의 및 비차별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무역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겠다.<sup>21)</sup> 특히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절차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 국가가 WTO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 개도국들의 발언권 강화 및 투표에서 개도국들의 가중치를 증가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3)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의 개선

WTO협정을 통하여 농산물, 서비스, 지식재산권, 투자 등의 조항은 많은 부분이 수정 및 추가가 이루어졌으나, 경쟁정책과 근로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도적으로 경직되어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경쟁력이 낮고 노동투입 비중이 높은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련 피해를 크게 보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수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각종 권익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 내용과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WTO 협정규범 중 경쟁정책과 근로기준을, 개도국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협정내용을 개선함과 동시에, 세심한 기준마련과 공정한 판정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에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9) Vicky Chemutai and Hubert Escaith,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f WTO accession and its commitments",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1.26, p3.

20) Annual report,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 p3.

21) 이균, "WTO의 FTA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p.203.

## 2. 분쟁해결 사례 관련 시사점

### (1) 상소기구의 심사 재량권 미흡문제 해결

WTO 상소기구는 패널에서 항소된 분쟁을 심의하고 최종판정하고 있어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요사안은 상소기구가 심사재량권이 없어 WTO협정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어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의 EU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분쟁사례와 같이 복잡하지 않은 분쟁사건 경우에는 패소국은 즉시 판정이행을 하고 상대국에 초래하는 피해를 줄여야 함에도 WTO 상소기구는 분쟁사건의 상소조건 적합성, 완벽한 증거확보 필요성, 확실한 법률근거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논거가 확실한 경우 패널 판정에 있어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안까지도, 상소조건을 심사하고 기각하는 권력이 없어 신속한 절차진행을 방해 받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소 사건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만으로도 패널 판정이 완벽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법률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상소를 신청하는 사건이 상소기구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신속한 기각을 함으로서 상소절차의 남용을 줄이고 상소위원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상소기구의 분쟁해결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 (2)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교차보복조치 이행불가 문제

교차보복이란 WTO의 협정 하에서 피소당사국이 패널 판정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패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양허의 정지는 문제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sup>22)</sup> WTO 역사상 공식적으로 교차보복을 승인한 사례는 총 3건으로, EC-바나나(EC-Bananas III), 미국-도박서비스(US-Gambling Services) 및 미국-브라질면화(US-Brazil) 분쟁 사례가 있다. 교차보복에 관련한 사안 3건 모두 개도국이 제기한 무역 분쟁으로, 선진국인 피고가 보복조치를 허용 받은 사례이다. 교차보복이 허용되어 WTO 분쟁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력 격차가 커서 교차보복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EC-바나나(EC-Bananas III) 사건은 패소국인 미국의 경제력이 승소국인 안티구아 GDP의 14만 배나 되어 미국이 교차보복을 허용 받고도 개도국인 안티구아에 대한 이행할 수가 없었다. WTO 분쟁해결 협정의 권위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보복조치 이행 승인을 받은 경우 WTO의 다른

22) 교차보복은 이의 실행을 허용하기 위해서 엄격한 판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침해를 입은 분야에서의 양허의 정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이러한 제재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는 동일 협정상의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를 정지하고, 셋째 위의 방법도 비현실적이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야 인정할 수 있다.

개도국 회원들도 연합하여, 같이 패소국에 대해 연합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 이를 통하여 패소국의 WTO 규범에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또한 개도국들은 연합보복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패소국도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 판정의 성실한 이행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sup>23)</sup>

### (3) 입증 문제

증거 제공과 채용은 분쟁해결 절차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서 분쟁해결 방법인 협의, 조정, 중재 또는 패널절차 및 상소절차에서 무역 분쟁의 판정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WTO 분쟁해결 체제는 입증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실제 판정 과정에서 패널 또는 상소위원들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재량으로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WTO 협정 내용 중 강제적인 증거 제출 조건, 제출 증거에 대한 대질조항 및 증거 설득력에 대한 규정 내용이 없으며, 분쟁해결 기구가 조사한 증거에만 의거, 판정하여 분쟁 해결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사건은 WTO가 한국의 증거제시 부족을 이유로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객관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원자로 폭발로 인한 방사능 오염 관련 증거를 획득하기 힘들고, 또한 일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진실성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외에도 중국, 대만 등의 인접 국가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일부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제무역 분쟁의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증대되면서, 기술문제나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도 함께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 WTO 분쟁해결 체제에서 입증 문제는 주장자가 입증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분쟁해결 기구가 증거자료의 수집, 전문가의 자문 및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 증대한 환경 문제로 인한 무역 분쟁관련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서 여러 국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일방 분쟁 당사자가 증거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쟁해결기구의 노력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WTO 협정 내용은 강제적인 증거 제출 조건, 제출 증거에 대한 대질조항 및 증거 설득력에 대한 규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 (4) 보복조치와 이행패널의 동시진행 문제

보복조치는 판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 해결 절차의 최후 구제수단이다. WTO 협정 분쟁해결 이행을 위해 합리적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분쟁해결기구가 보복을 승인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제소국은 이행분쟁조치 판결 이전에

23) 박덕영,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법무부」, 통권 제90호, 2009.12, pp.33-34



보복 승인 요청해야 한다.<sup>24)</sup>

그러나 실제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분쟁 당사국은 ‘순서합의’를 체결하여 패소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판정을 먼저 하고 제소국은 판정 결과에 따라 보복 승인 요청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즉, 패소국의 이행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날 경우 30일이 지났더라도 보복절차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진행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의 ‘돌고래 안전’ 라벨링 사건 같이 보복조치 승인과 이행패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당사국들 간의 사전에 ‘순서합의’가 없는 경우, 승소국은 상소기구에 보복승인을 요청하고 패소국은 이에 불복하고 중재회부 절차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분쟁당사국들이 ‘순서합의’에 따라 보복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패소국은 새로운 이행조치를 도입하고 이것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이행 패널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WTO 분쟁해결 협정 실무 이행 중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규범의 내용을 개정하고 해결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 패소국이 WTO 협정내용에 따라 패널 판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다. 만약 패소국이 이행 의지가 없고 시간을 끌기만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복조치를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승소국이 보복조치를 요청하고 패소국이 이에 반대하여 이행패널 절차를 신청하는, 즉, 보복절차와 이행여부 판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보복조치를 먼저 승인해 주고 이행해야 한다.<sup>25)</sup>

만약 패소국이 이행패널 절차 진행과정에서 중재와 같은 새로운 이행조치를 도입하면 승소국에 대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나서 다시 2차 이행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판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패소국이 WTO 협정 판정을 무시할 수 없고 성실하게 중재판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V. 결론

WTO 분쟁해결 기구는 출범 이래 22년 동안 국제통상 환경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기구 중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역관련 국제기구로 평가 받고 있다. WTO 분쟁발생 실태 분석 결과, WTO 분쟁해결체제 출범 이후, 2017년 현재 까지 총 제소건수는 528건이고, 이 중 선진국이 371건(70%), 개도국이 157건(30%)을 제소하여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WTO 분쟁해결 협정에 대한 이용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7부터 2016까지의 연도별 주요 국가의 분쟁사안의 경우, WTO 분쟁해결

24) 김진동,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뉴스 내용, 2016.4.15.

25) 강수미, “WTO 보복조치의 동등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06.01, pp.87-90.

제소 건수는 미국이 28건으로 가장 많으며, 피소 현황은 중국이 3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주요국가의 수출입 실적과 분쟁사건 건수의 비율을 보면 수출입 실적이 높을수록 분쟁건수도 증가하는 반면 수출입 실적이 낮은 국가는 분쟁 건수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WTO 분쟁해결 기구의 운영 관련,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일부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WTO 분쟁해결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패널 업무부담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 확대 개편, 개도국 WTO 분쟁해결 이용률의 제고 노력,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쟁해결 사례 분석 결과, 상소기구의 심사재량권 미흡,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교차 보복조치이행 불가, 보복조치와 이행패널 동시진행 문제, 입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당 분야 향후 연구 방향 설정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분쟁해결 사례를 최근 대표적으로 이슈화되고, 규모가 크며,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사례 5가지를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세부 분석에 대한 한계점을 가진다.

향후 본 연구에 더하여 다양한 국제분쟁 사례가 산업별 및 업종별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지고 추가되어진다면 본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동시에, WTO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작업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미, “WTO 보복조치의 동등요건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06.01, pp.87-90.
- 김윤화, “동남아시아 WTO 무역분쟁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발표논문, 2017.2, pp.14-15.
- 김현정, ‘WTO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규범 충돌의 해결: WTO 협정과 비통상 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3, p.89.
- 김호철, “WTO 분쟁해결절차: 이행 및 구제절차”, 「법무부」, 통원 제108호, 2012.12.20., p.43.
- 박덕영, “WTO 분쟁해결제도 15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법무부」, 통권 제90호, 2009.12, pp.33-34
- 박종삼, “WTO 협정하에서 FTA 체결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 p.234.
- 성태곤,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촉진 및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관세청」, 2017, pp.11-12.
- 안덕근·이효영,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법무부」, 통권 제92호, 2010.4, pp.29-33.
- 이균, “WTO의 FTA룰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7, p.203.
- 이신규, 「국제통상론」, 도서출판 두남, 2015.7.
- 임송수, “2015년 WTO 무역 분쟁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 제179호, 세계농업, 2015.7, pp.178-182.
- 이효영,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교차보복: 제도상 문제점 및 적용사례 분석”, 「법무부」, 통권 제92호, 2010.4, p.32.
- 장송화, “WTO 판정의 집행과 구제수단: DSU 22.6 중재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127호, 2016.2, p.14.
- 정기창, “WTO 분쟁 패소국의 불이행요인과 이행촉진방안 분석: 분쟁해결절차(DSU) 활용의 실무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무부」, 통권 제112호, 2013.8.20, p.49.
- 杜驍立, 학위논문: ‘WTO분쟁해결제도상 DSU보상조치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 p.2.
- KIEP 북경사무소, “중국 WTO 가입 15주년 회고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 2017.1.26., pp.3-5.

김진동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뉴스 내용, 2016.4.15.

류난영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 뉴시스, 2017.10.17.

Annual report,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 p3.

Vicky Chemutai and Hubert Escaith,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conomic effects of WTO accession and its commitments”,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1.26, p3.

Xiaoping Wu, “Interplay between patents and standard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ector and its relevanc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s”, 「World Trade Organization」, 2017.4.3., pp24-25.

## ABSTRACT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bout DSB of WTO

Zhou, Zhen  
Suk-Chul Kim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

**Key Words** : WTO Dispute Settlement, DSB, Panel Decision, Trade Disputes